



규정 및 규칙 제·개정(안)

- 의견청취 -



규정 및 규칙 제·개정(안) 목차

1.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3
2.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0
3. 직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4
4.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7
5. 직무연수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1
6.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4
7.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6
8. 명예직원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28

1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 정 이 유

- 경기도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안내 및 권고*에 따른 가족친화적 제도 정비
 - *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안내 및 활용 권고(道공공기관담당관-12179호, 2023.9.6.)」,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관련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활용 권고(道공공기관담당관-653호, 2024.1.11.)」 등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참고하여 인사 및 복무제도를 정비
- 임용자격기준의 학위취득과 경력기준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기술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 도모

2. 개정 주요내용

- 승진 및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법정 휴직기간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안 제2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 특별휴가 제도를 확대 개선함 (안 제38조, [별표2])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 **새내기도약휴가(3일)** 도입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 **장기재직휴가(5일)** 도입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도입
 - 배우자 난임치료에 대한 **동행휴가** 도입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다태아의 경우 15일까지**로 확대
- 임용자격기준의 명확한 기술 (안 [별표1])
 - 임용자격 기준 각 직급별 주요 내용에서 ‘학위소지자로서 경력’이라 기술된 내용을 ‘학위취득 후 경력’으로 명확히 기술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참고사항

- 경기도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안내 및 권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발채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인사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제5호를 “5. 육아휴직기간”에서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으로 개정한다.

제38조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이관하고, 제1호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을 신설한다. 같은 조 제18항 내지 제21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⑱ 직원은 임신 후 12주 이후부터 36주 이내인 기간 동안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⑲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직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1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⑳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㉑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직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 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1] 직급별직원임용자격기준 “2. 연구직” 중 “박사학위 소지자로서”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로, “3. 행정직”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를 “고등학교 이상 졸업 후”로 개정한다.

[별표2] 특별휴가일수표의 출산 배우자 휴가일수를 “10”에서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로 개정한다.

부 칙 (0000.00.0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③ (생략) ④ 제1항 제1호의 휴직중에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진 및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 4. (생략) 5. 육아휴직기간	제21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4. (현행과 같음)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
제38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원장은 장기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4. <신설> ⑦ ~ ⑰ (생략) ⑱ <신설> ⑲ <신설> ⑳ <신설> ㉑ <신설>	제38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⑦ ~ ⑰ (현행과 같음) ⑱ 직원은 임신 후 12주 이후부터 36주 이내인 기간 동안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⑲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직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때마다 제1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⑳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다. ㉑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개정안																																				
[별표1] 직급별직원임용자격기준 1.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감사실장(생략) 2. 연구직	[별표1] 직급별직원임용자격기준 1.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감사실장(생략) 2. 연구직																																				
<table border="1"> <tr> <th>직 급</th><th>임 용 자 격 기 준</th></tr> <tr> <td>선임연구위원 '가급'</td><td>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td></tr> <tr> <td>선임연구위원 '나급'</td><td>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8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가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td></tr> <tr> <td>연구위원 '가급'</td><td>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td></tr> <tr> <td>연구위원 '나급'</td><td>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研究院에서 研究員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td></tr> </table>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선임연구위원 '가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선임연구위원 '나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8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가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研究院에서 研究員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table border="1"> <tr> <th>직 급</th><th>임 용 자 격 기 준</th></tr> <tr> <td>선임연구위원 '가급'</td><td>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td></tr> <tr> <td>선임연구위원 '나급'</td><td>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가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td></tr> <tr> <td>연구위원 '가급'</td><td>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td></tr> <tr> <td>연구위원 '나급'</td><td>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研究院에서 研究員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td></tr> </table>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선임연구위원 '가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선임연구위원 '나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가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研究院에서 研究員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선임연구위원 '가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선임연구위원 '나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8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가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研究院에서 研究員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선임연구위원 '가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선임연구위원 '나급'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가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研究院에서 研究員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행정직	3. 행정직																																				
<table border="1"> <tr> <th>직 급</th><th>임 용 자 격 기 준</th></tr> <tr> <td>경영본부장 <식 제></td><td></td></tr> <tr> <td>1급</td><td>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6년 이상 또는 5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2급</td><td>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3급</td><td>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4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4급</td><td>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5급</td><td>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4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마. 상기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6급</td><td>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7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7급</td><td>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able>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경영본부장 <식 제>		1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6년 이상 또는 5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4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로 4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마. 상기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7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table border="1"> <tr> <th>직 급</th><th>임 용 자 격 기 준</th></tr> <tr> <td>경영본부장 <식 제></td><td></td></tr> <tr> <td>1급</td><td>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 등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2급</td><td>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 등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3급</td><td>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4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 등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4급</td><td>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5급</td><td>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 후 4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마. 상기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6급</td><td>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7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 <td>7급</td><td>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able>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경영본부장 <식 제>		1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 등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 등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4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 등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 후 4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마. 상기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7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경영본부장 <식 제>																																					
1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6년 이상 또는 5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4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로 4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마. 상기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7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경영본부장 <식 제>																																					
1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 등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3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 등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4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공기관 등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6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 후 4년 이상의 행정경력이 있는 자 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마. 상기 각 항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가. 연구원에서 행정직 7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공무직(생략)	4. 공무직(생략)																																				

현행			개정안		
[별표2] 특별휴가 일수표			[별표2] 특별휴가 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부 칙 (0000.00.00)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 경기도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제도 도입 안내 및 권고

(1)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안내 및 활용 권고(道공공기관담당관-12179호, 2023.9.6.)」



경기도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안내 및 활용 권고

1. 공공기관담당관-10085(2023. 7. 30.)호와 관련입니다.

2.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불임과 같이 관련 제도를 안내하오니,

3. 각 주무부서 및 기관에서는 임직원들이 법령 및 지침상의 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정비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관련법령상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1부, 끝.

(2)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관련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활용 권고(道공공기관담당관-653호, 2024.1.11.)」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관련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안내 및 활용 권고

1. 공공기관담당관-12179(2023.9.6.)호 관련입니다.

2.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시행 '24.1.10.)에 따라 가족친화적 복무제도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임직원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연번	내 용	비 고
상 위 법령 반영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0일 → 15일】 ※ 단 태아 10일 / 다태아 15일 부여	별표 5
道 자 체 추진	○ 배우자 난임치료시술 시 남성공무원 '동행휴가' 신설 【특별휴가 2~4일】 ▶ 현 여성공무원 시술종류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난임치료시 동행휴가 부여 * 인공수정 시술 : 2일 / 동결 보존된 배아 미식 체외수정 시술 : 3일 /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 : 4일	제20조 (제3항)

불임 1. 경기도공무원 복무 조례(개정반영) 1부,
2. 경기도공무원 복무 조례(별지별표) 1부,
3.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종류 1부, 끝.

□참고사항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발췌

(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생략)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생략)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22조(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⑥ (생략)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제20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1.10.]

④ ~⑤ (생략)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⑫ (생략)

⑬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⑭~⑰ (생략)

⑱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⑲~㉑ (생략)

㉒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2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 정 이 유

- 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인사복무규정」 개정안 상 승진·승급기간 산입에 대한 내용과 동일하게 명확히 명시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등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4조)
 - 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 ※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제21조 참조
 - 제3호 “직무수행상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과 제6호 중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이 중복되므로 내용 정비
- 가족수당, 봉급조정수당 지급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던 것을 해당 규정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 (안 제33조, [별표10])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5. 육아휴직기간”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으로 개정하고, 제6호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휴직 및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정직처분기간”을 “정직처분기간”으로 개정한다.

제33조(가족수당) 제8항 “그 밖에 가족수당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를 “그 밖에 가족수당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별표10의 비고를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를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재직기간의 특례) 휴직기간은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 2.(생략) 3. 직무수행상 얻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4. (생략) 5. <u>육아휴직기간</u> 6. <u>가족돌봄휴직 등 법정휴직 및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정직처분기간</u>	제4조(재직기간의 특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u>」상 육아휴직기간 및 가족돌봄휴직 6. <u>정직처분기간</u>
제33조(가족수당)①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4명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4만원, 자녀는 월3만원(둘째 자녀 월7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11만원), 그 밖의 가족에 대하여는 1명당 월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 4. (생략) ③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이를 부양하는 직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중 1명의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④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양가족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가족수당)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가족수당은 관공서의 기록 등에 등재된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월로부터 지급하고, 부양 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한다. ⑥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월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월 도중에 휴직 처분을 받거나 복직된 경우에는 처분일 또는 복직일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지급한다. ⑦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⑧그 밖에 가족수당의 지급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⑤(현행과 같음) ⑥(현행과 같음) ⑦(현행과 같음) ⑧----- ----- ----- <u>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u>																	
[별표10]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 및 봉급 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지 급 기 준</th></tr><tr><th>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th><th>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원</th></tr><tr><td>지급액</td><td>기본연봉액의 54퍼센트의 12분의 1의 4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td><td>별표1의 직원봉급표의 42.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td></tr><tr><td>지급일</td><td colspan="2">8월 및 10월</td></tr></table>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산입방식 <table><tr><th>구분</th><th>연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th><th>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th></tr><tr><td>산입방식</td><td>전년도 기본연봉액 × 0.54 × 봉급 조정수당의 전년도 6월간 평균지급률</td><td>전년도 봉급액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6월간 평균지급률 ÷ (1+10.7/12))</td></tr></table> (비고)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구분	지 급 기 준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원	지급액	기본연봉액의 54퍼센트의 12분의 1의 4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1의 직원봉급표의 42.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일	8월 및 10월		구분	연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	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	산입방식	전년도 기본연봉액 × 0.54 × 봉급 조정수당의 전년도 6월간 평균지급률	전년도 봉급액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6월간 평균지급률 ÷ (1+10.7/12))	[별표10]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 및 봉급 산입방식 1. 봉급조정수당 지급기준 (현행과 같음)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산입방식 (현행과 같음) [비고]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u>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u>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지 급 기 준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직원																
지급액	기본연봉액의 54퍼센트의 12분의 1의 4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1의 직원봉급표의 42.5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일	8월 및 10월																	
구분	연봉제 적용을 받는 직원	연봉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																
산입방식	전년도 기본연봉액 × 0.54 × 봉급 조정수당의 전년도 6월간 평균지급률	전년도 봉급액 × (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6월간 평균지급률 ÷ (1+10.7/12))																

3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규정 상 징계양정기준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안 [별표1])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를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기준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징계양정기준		[별표1] 징계양정기준 (현행과 같음)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1. 상설업무 위반 가. 공금횡령 나. 공금유용, 업무상 해밀, 횡도·사기 다.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라. 직무대란 또는 회계질서 문란 마. 부당한 지시 바. 소극행위,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 행위, 성 비위 관련 2가 외에 직무상 비밀정보 및 파공비 정보 무단 이용, 부정행위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감봉 감봉·정직 감봉·정직 감봉·정직 감봉·정직
사. 부정행위 아. 비밀을 고발하지 않거나 부정한 수단 수형 자. 기타 다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감봉 감봉·정직 감봉·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2. 복종업무 위반 가. 자의·타의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장애를 자질종 손 경우 나. 기타 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감봉·정직	감봉·정직 감봉
3. 직장 이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질 나. 무단결근 다. 기타 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감봉·정직 감봉·정직	감봉·정직 정직·감봉 감봉
4. 징계·훈장업무 위반	파면·해임	감봉·정직	감봉
5. 비밀 준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밀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유통 및 관련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감봉 감봉·정직 감봉·정직 감봉·정직	감봉·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
6. 삭제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직장내 피폭됨 바. 기타 다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감봉·정직 감봉·정직 감봉·정직 감봉·정직 감봉·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 감봉
8. 영리 업무 및 결직 금지업무 위반	파면·해임	감봉·정직	감봉
9. 정치활동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감봉·정직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감봉·정직
비고			
1. 제1호 나목의 "열도·사기"는 결기연 구원의 재산에 해당하는 행위에 적용한다.			
2. 제1호 바목의 "직무대란"은 바목의 "소극행위"를 제외한다.			
3. 제1호 바목의 "소극행위"이란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대란 중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결기연구원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 바목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 행위"는 일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2조외 고직무관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1호 바목의 "부정한 수단 수형"에서 "조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 수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다.			
6. 상기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23년 경기연구원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道기획전략담당관-407호, 2024.1.10.)」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참고하여 채용비리 예방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채용계획 사전협의제를 도입함 (안 제7조의2)
-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공정채용확인서 제출 의무를 반영함 (안 제17조)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참고사항 : 경기도 지도·점검 결과('24.1.10.) 발췌

5-1. 채용비리 예방 제도화 여부

○ 출자출연기관 채용비리 예방 제도 17개 중 15개 반영, 2개 미반영

분야 및 내용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검토결과
5. 채용계획 사전협의제 도입	Ⅲ. 직원의 인사 ② 채용계획 수립 가. 채용계획 사전 협의 ○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미반영
14.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마련 및 응시자격 제한 명문화	Ⅲ. 직원의 인사 ④ 시험의 방법 카. 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함 ○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함	미반영

▶ '24년 상반기 내 채용 규칙에 반영(타 기관 사례 참조)

※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직원 채용 규칙」

- 제4조의2① 대표이사는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의2③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동의서를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 채용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직원채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채용계획 사전협의) 원장은 채용공고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채용 등 경기도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제27조 제4항 “원장은 부정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를 채용 내정자로부터 채용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를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채 용 명 :

응시분야 :

생년월일 :

성 명 :

상기 본인은 경기연구원 채용 전형에 지원하며 경기연구원의 채용 관련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관련 규정 등에 의거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전형절차 합격 또는 최종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확인자 : (인)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신설>	제7조의2(채용계획 사전협의) 원장은 채용공고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채용 등 경기도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
제17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직원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심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합격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③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의거 합격이 취소된 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간 채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신설>	제17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 ----- ----- -----. ②----- -----. ③----- ----- -----. ④ 원장은 부정합격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정채용확인서를 채용 내정자로부터 채용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별지 제1호서식] 공정채용확인서 채용명 : 응시분야 : 생년월일 : 성명 : 상기 본인은 경기연구원 채용 전형에 지원하며 경기연구원의 채용 관련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관련 규정 등에 의거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전형절차 합격 또는 최종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및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0000. 00. 00. 확인자 : (인)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부 칙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직무연수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23년 경기연구원 지도·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도기회전략담당관-407호, 2024.1.10.)」에 따라 교육(연수) 복귀 후 의무복무 위반 시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의무복무 위반 시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미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함 (안 제14조)

* 제10조(비용지원) ① 연구직 연수자에게 1년간 연구활동지원비 1,000만원을 지급하되, 연수할 지역이 국외의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행정직 및 공무원 연수자에게는 교육비 등 실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자의 연수할 지역이 국외의 경우 여비규칙에 의한 왕복항공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개정(안): 덧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임

5. 참고사항 : 경기도 지도·점검 결과('24.1.10.) 발췌

6-1. 임·직원 복무관리 적정 여부 ○ 복무실태 정기점검, 주중 외부강의에 대한 연차 공제 등 적정 ○ 연수 복귀 후 의무 근무기간 위반에 대한 제재·반환 규정 없음 - 「경기연구원 직무연수 시행규칙」 제14조(의무사항) 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연수기간의 2배의 기간만큼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중략)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략)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교육 복귀 후 의무 근무 위반 등에 대한 교육비 반환 규정 신설 ※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에 준하여 개정
---	---

직무연수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직무연수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무사항) ① 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연수기간의 2배 기간만큼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② 연수자는 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 미준수 시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의무복무 미준수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무사항) 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연수기간의 2배 기간만큼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사항) ① 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연수기간의 2배 기간만큼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② 연수자는 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 미준수 시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의무복무 미준수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함 (안 제20조)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0조를 “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른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징계양정 기준) 원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 <u>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u> 」의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 <u>지방공무원 징계규칙</u> 」을 준용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 「 <u>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u> 」을 따른다. 부 칙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국외여비정액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함 (안 [별표2])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여비지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2] 중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4] ‘국외 여비 지급’의 ‘비고 2. 및 3.’을 준용한다.”를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4] ‘국외 여비 지급’의 ‘비고 2. 및 3.’을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 (생략)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의 ‘비고 2. 및 3.’을 <u>준용</u>한 다.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 (생략) ※ ----- ----- <u>적용</u>한 다. 부 칙 (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명예직원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1. 제정이유

-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직원이 연구원을 정년 퇴직한 후에도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연구·행정 자문, 사회활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제기
 - 2024년 제1차 GRI노사협의회 노측 제안 안건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제도화하는 것으로 노사 협의

2. 제정 주요내용

- 명예직원의 자격, 위촉절차, 위촉해지, 예우에 대하여 규정함

3. 제정(안): 덧 붙 임

명예직원 운영규칙 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명예직원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명예직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따른 ‘명예직원’이란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직원이 연구원을 정년 퇴직한 후에도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연구·행정 자문, 사회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해 위촉된 자를 말하며, 호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명예직원은 연구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한 자로서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이어야 한다.

제4조(위촉절차) ① 명예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심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1. 부서장(또는 상위 직급자) 추천서
2. 인사기록카드(상벌 내역 포함)
3. 연구 또는 업무 수행 목록
4. 기타 연구원 기여사항 등

② 제1항 제1호의 추천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위촉해지) 원장은 명예직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직원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타 기관에 상근(주 3회 또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으로 취업할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본인이 원할 경우
4. 기타 사유로 명예직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연구원에서 판단할 경우

제6조(예우 등) ① 명예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따르는 고용계약 관계로 보지 아니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원장은 명예직원에 대해 명함, 이메일 및 기타 편의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직원추천서					
추천대상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정년퇴직일		재직기간	
추천사유					
(추천대상자의 인격, 덕망, 연구업적 등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 내용 기술)					
상기 대상자를 명예직원으로 추천합니다. 년월일 추천인 (서명) 경기연구원장 귀하					